

#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강창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269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9. 26.

발의자 : 강창일 · 홍의락 · 이용호  
이종걸 · 송갑석 · 이상현  
김민기 · 홍익표 · 김해영  
윤일규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재해예방사업은 단위사업 위주의 단편적인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어 예방투자효과 및 방재시설 간 연계 미흡 등 피해원인의 근본적 해소에 한계가 있어, 풍수해로 인한 침수·붕괴 등 취약요인을 지역 단위별로 발굴하여 한꺼번에 일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, 동 사업의 대상, 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음.

이에, 사업의 대상,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(안 제15조3 신설).

##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3(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계획수립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풍수해로 인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일괄 정비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단위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계획(이하 “풍수해 종합정비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할 수 있다.

1. 제12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
  2. 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붕괴위험지역
  3. 「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」 제9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위험저수지
  4. 「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소규모 위험시설
  5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나 시설
- ② 제1항에 따라 풍수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경우 제13조부터 제15조의2까지를 준용한다.

③ 풍수해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대상,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<p><u>제15조의3(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계획수립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풍수해로 인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일괄 정비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단위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계획(이하 “풍수해 종합정비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제12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</u></li> <li><u>2. 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붕괴위험지역</u></li> <li><u>3. 「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」 제9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위험저수지</u></li> <li><u>4. 「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소규모 위험시설</u></li> <li><u>5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</u></li> </ol>

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나  
시설

② 제1항에 따라 풍수해 종합정  
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경우 제1  
3조부터 제15조의2까지를 준용한  
다.

③ 풍수해 종합정비계획 수립  
및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대상,  
절차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 
다.